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22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이해민 · 서왕진 · 김재원
황운하 · 김선민 · 신장식
김준형 · 정춘생 · 박은정
한창민 · 차규근 · 백선희
강경숙 · 용혜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분명한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었으며, 구속기간 산입 규정에 관행에 없던 시간 단위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혐의자를 석방한 결정은 명백한 법원의 사법 왜곡이자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음. 이처럼 12.3 불법계엄 이후 빚어진 ‘사법내란’ 논란은 법원의 밀실 행정과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치적 이해가 아닌 민생 중심의 사법개혁을 목표로 함.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체불임금 · 산재 · 노사분쟁, 소비자집단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자 함.

아울러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법관 임용은 현행 5년으로 유지하되 경력별 임용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대법관 수 확대를 통해 사건 적체도 해소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 보호와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임(안 제3조, 제9조의3 · 제9조의4 및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3까지 등).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종류로”를 “9종류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노동법원·소비자법원과”로 한다.

8. 노동법원

9. 소비자법원

제4조제2항 중 “포함하여 14명으로”를 “제외하고 30명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법관”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으로, “3분의 2”를 “2분의 1”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를 “행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법행정위원회) ①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법행정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그 의결에 따라 대법원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 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중 “자문기관으로”를 “심의·의결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사로”를 “각급 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판사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각급 법원의 장의 호선
2. 각급 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판사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기본원칙(법률, 대법원규칙 및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4.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5. 판사회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 법원장이 회부한 사항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① 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둔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수를 고려하여 법관대표를 각급 법원별로 할당하되 100인 이상의 법관대표로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이 법에 따른 각종 위원의 선출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 사법행정에 관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건의할 사항
4. 사법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 또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의견을 구한 사항
5.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법률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9조의4(전국법원장회의) ①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등을 위하여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사로 구성되는 전국법원장회의를 둔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국법원장회의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 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을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대법원의 직원을”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진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원행정처는”을 “사무처는”으로, “통계·송무(訟務)”를 “통계”로, “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를 “법무사에”로 한다.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제3항 중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를 “판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을 “재판연구관의 직제 및”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법관인사위원회)”를 “(법관인사에 대한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인사위원회는”을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의 인사와 관련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제44조에 따른 판사의 보직과 전보에 관한 사항

②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인사에 대한 심의에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판사로 보한다”를 “해당 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판사로 보한다”를 “특허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판사로 보한다”를 “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지원장은 해당 지원의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밖의 지원장은 지방법원장이 해당 지방법원의 판사회의의 동의를 받아 지명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아목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중 “판사로 보한다”를 “해당 가정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가정법원에”를 “제1항에 따라 부를 두는 가정법원에”로,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판사로 보한다”를 “행정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행정법원에”를 “제1항에 따라 부를 두는 행정법원에”로,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 중 “판사로 보한다”를 “회생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40조의6제2항 중 “회생법원에”를 “제1항에 따라 부를 두는 회생법원에”로,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편에 제7장(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노동법원

제40조의8(노동법원장) ① 노동법원에 노동법원장을 둔다.

② 노동법원장은 노동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노동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노동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9(부) ① 노동법원에 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를 두는 노동법원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10(심판권) ① 노동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관련된 산업재해 사건
 3. 「임금채권보장법」 등과 관련된 체불임금 사건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형사사건
 5.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② 노동법원의 심판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편에 제8장(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소비자법원

제40조의11(소비자법원장) ① 소비자법원에 소비자법원장을 둔다.

② 소비자법원장은 소비자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소비자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비자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12(부) ① 소비자법원에 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를 두는 소비자법원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13(심판권) ① 소비자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 집단 소송
(50인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원고로 참여한 소송으로서 사실적·법률적 쟁점이 공통된 소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나. 「제조물 책임법」

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근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소송을 말한다)

가. 「제조물 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마. 「환경보건법」

4.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소비자법원의 심판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대법관 수의 3분의 1 이상은 대법원장의 제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관의 직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람으로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사위원회의”를 “사법행정위원회의”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10명의”를 “15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전단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1.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
 2.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 경우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 이 경우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7.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이 경우 국회의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9.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 ⑨ 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

보자의 사생활보호 및 인권존중을 위하여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지명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사를 임용할 때 5년, 7년, 10년 이상 등 법조 재직연수를 구분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그 경력에 적합한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사 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를 “보직(補職)과 전보는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회생법원장”을 “회생법

원장, 노동법원장, 소비자법원장”으로 한다.

② 판사의 보직과 전보는 재판업무의 원활한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지 아니한다.

③ 판사의 보직, 근무지, 사무분담은 재판업무의 원활한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2년 내에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근무성적 등의 평정)”을 “(근무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공정한”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공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를 “연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관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인사위원회의”를 “사법행정위원회의”로 한다.

제47조 중 “인사위원회의”를 “사법행정위원회의”로 한다.

제50조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하고~~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관의 파견근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겸임 등 제한) 법관을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법행정위원회는 각급 법원장에게 그 법원에 근무할 법원공무원의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의2제3항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및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편 제2장(외환의 죄)의 죄에 관한 사건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요 사건에 관한 재판의 경우에는 생중계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생중계의 범위와 구체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편 제1장의 제목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사법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원의 인사·예산(예산 요구서, 예비금 지출안 및 검토보고서의 검토를 포함한다)·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 집행관 · 법무사에 관한 사항
- 2.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법원규칙의 제 · 개정 요구
- 4. 대법원예규의 제 · 개정
- 5. 그 밖에 사법행정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67조의3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 임명한다.

1. 법관 3명
 2. 변호사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다만, 판사 또는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재판제도 및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주요 사업정책의 수립 등 사법행정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67조의3(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임명할 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명
2.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3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⑤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임명되면 해당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법관이 아닌 위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추천하여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67조의5(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67조의6(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관이 아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법관인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7(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에 사무처장비서관을 둔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임명) ①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무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법행정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69조 중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을 “사무처장은”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법원행정처에”를 “사무처에”로, “대법원규칙으로”를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둔다”를 “두되, 사법행정위원회가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행정처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판사 중에서”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정무직으로 임명하거나 판사 중에서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고”로, “검사”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정무직으로 임명하거나 검사”로, “대법원장이 보한다”를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하거나”를 “사법행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로 한다.

제76조의3제1항 중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를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하거나”를 “사법행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하거나 임명하거나”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판사로”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판사로”로, “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판사”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판사”로, “보한다”를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로 한다.

제8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를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를 “사법행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사법행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이 되는 대법관 정원 17인 중 5인의 증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인의 증원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인의 증원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인의 증원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3인의 증원은 이 법 시행 이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u>7종류</u> 로 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③ 고등법원 · 특허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 · <u>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제3조(법원의 종류) ① ----- ----- <u>9종류</u> 로-----. 1. ~ 7. (현행과 같음) <u>8. 노동법원</u> <u>9. 소비자법원</u>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회생법원</u> <u>· 노동법원 · 소비자법원과</u> ----- ----- ----- ----- ----- ----- -----.
제4조(대법관) ① (생략)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u>14명으로</u> 한다.	제4조(대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외하고 30명으로</u> -----.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u>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u>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 <u>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u> ----- <u>2</u> <u>분의 1</u> ----- <u>행</u> <u>사한다.</u> ----- -----

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달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登記,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

1. ~ 4. (현행과 같음)

②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사법행정위원회) ①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법행정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그 의결에 따라 대법원장, 각급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
· 특허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
원 ·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
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
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 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
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
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

-----심의 · 의결기관으
로-----.

② -----각급 법원에 소
속된 판사 전원으로-----

-----.

③ 판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각급 법원의 장의 호선

<신 설>

2. 각급 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
규의 제정 및 개정
 3. 판사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
당에 관한 기본원칙(법률, 대
법원규칙 및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
 4.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5.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
분의 1 이상이 의제로 할 것
을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각급 법원의 사법행
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 법원장이 회부한 사항
-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①
- 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
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둔다.
-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수를 고려하여 법
관대표를 각급 법원별로 할당
하되 100인 이상의 법관대표로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신 설>

각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이 법에 따른 각종 위원의
선출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
법원에 건의할 사항

3. 사법행정에 관하여 사법행정
위원회에 건의할 사항

4. 사법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 또는 사
법행정위원회가 의견을 구한
사항

5.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법률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9조의4(전국법원장회의) ① 사

법행정에 관한 자문등을 위하
여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판사로 구
성되는 전국법원장회의를 둔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국법원장회의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13조(대법원장) ① (생략)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생략)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 ② (생략)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대법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대법원의 직원을-----.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가진다.

제19조(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는-----
-----통계-----
-----법무사에-----
-----.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재판연구관) ① · ② (생략)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 ⑥ (생략)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신설>

제24조(재판연구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판사가-----
-----.

④ -----재판연구관의 직제 및-----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법관인사에 대한 심의)
<삭제>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의 인사와 관련하여-----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4조에 따른 판사의 보직과 전보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신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인사에 대한 심의에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u>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u> ⑤ <u>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제26조(고등법원장) ① (생략) ② <u>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u> ③ ~ ⑥ (생략) 제28조의2(특허법원장) ① (생략) ② <u>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u> ③ · ④ (생략) 제29조(지방법원장) ① (생략) ② <u>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u> ③ ~ ⑤ (생략) 제30조(부) ① · ② (생략)	<u><삭 제></u> <u><삭 제></u> 제26조(고등법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해당 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특허법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허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지방법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u>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u> 제31조(지원) ① (생략) ② <u>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u> ③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u>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u>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u>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u> 1. 2. (생략) 3. <u>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u>	음) ③ <u>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u> 제31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지원장은 해당 지원의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밖의 지원장은 지방법원장이 해당 지방법원의 판사회의의 동의를 받아 지명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제30조제2항 및 제3항</u> -----.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아. 「<u>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 6. (생 략) ② (생 략) 제37조(가정법원장) ① (생 략) ② 가정법원장은 <u>판사로 보한다.</u> ③ · ④ (생 략) 제38조(부) ① (생 략) ② <u>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u>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생 략) ② 행정법원장은 <u>판사로 보한다.</u> ③ · ④ (생 략) 제40조의3(부) ① (생 략) ② <u>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u>	-----. 가. ~ 사.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가정법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해당 가정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 부를 두는 가정법원에-----제30조제2항 및 제3항-----.</u>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행정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 부를 두는 행정법원에-----제30조제2</u>
--	--

용한다.

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생략)

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 ④ (생략)

제40조의6(부) ① (생략)

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신설>

<신설>

항 및 제3항-----.

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생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6(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부를 두는 회생법원에-----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장 노동법원

제40조의8(노동법원장) ① 노동법원에 노동법원장을 둔다.

② 노동법원장은 노동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노동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노동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9(부) ① 노동법원에 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를 두는 노

<신 설>

동법원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한다.

제40조의10(심판권) ① 노동법원
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
으로 심판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근로기준법」, 「근로
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
행 지원에 관한 법률」,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
련된 개별적·집단적 노사관
계에 관한 사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과 관련된 산업재해 사건

3. 「임금채권보장법」 등과 관
련된 체불임금 사건

<신 설>

<신 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형사사건

5.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노동법원의 심판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소비자법원

제40조의11(소비자법원장) ① 소비자법원에 소비자법원장을 둔다.

② 소비자법원장은 소비자법원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소비자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④ 소비자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12(부) ① 소비자법원에 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를 두는 소비자법원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의13(심판권) ① 소비자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 집단 소송(50인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원고로 참여한 소송으로서 사실적·법률적 쟁점이 공통된 소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나. 「제조물 책임법」

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근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소송을 말한다)

가. 「제조물 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마. 「환경보건법」

4.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소비자법원의 심판권에 관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생략)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생략)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임명하되, 대법관 수의 3분의 1 이상은 대법원장의 제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관의 직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람으로 임명한다.

③ -----사법행정위원회의-----

-.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5명의-----
-----.

③ -----

-----.

1.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 6. (생략)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신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 ⑧ (생략)

<신설>

2.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 경우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 이 경우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4. ~ 6. (현행과 같음)

7.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이 경우 국회의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8. -----

-----2명. -----

--.

9.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④ -----호선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사생활보호 및 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임용자격)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 한 사람에 대
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신 설>

권존중을 위하여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⑩ ----- 제9항-----

-----.

제41조의3(헌법 재판소재판관후보
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지
명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
회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
하여는 제41조의2제2항부터 제
10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2조(임용자격)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판사를 임용
합할 때 5년, 7년, 10년 이상
등 법조 재직연수를 구분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그 경력에 적
합한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
사 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④ (생 략)

⑤ 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생 략)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생 략)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신 설>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5항-----

-----.

제43조(결격사유) ①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 제6호와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보직) ① -----보직(補職)과 전보는 사법행정위원회가-----.

② 판사의 보직과 전보는 재판업무의 원활한 수행상 불가피

<신 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지 아니한다.

③ 판사의 보직, 근무지, 사무분담은 재판업무의 원활한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2년 내에 변경하지 아니한다.

④ -----

----- 회생법원장, 노동법원장, 소비자법원장-----

-----.

제44조의2(근무평정)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의
를 받아 공정한-----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행정위원회는-----

-----연임 등의-----.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판사의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
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
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 ③ (생략)

제47조(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
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
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
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과건근무) 대법원장은 다
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과건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과건근무에 동의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
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관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
-----사법행정위원회
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
직) -----

-----사법행정
위원회의-----
-----.

제50조(과건근무) 사법행정위원회
는-----

-----.

다

서 신 설>

제52조(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 ② (생략)

만, 법관의 파견근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제52조(겸임 등 제한) 법관을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다.

제53조(법원직원) ① -----
-----사법행정위원회가

-----.

② 사법행정위원회는 각급 법원장에게 그 법원에 근무할 법원공무원의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u>대법원장의 임용한다.</u> ④ ~ ⑥ (생략)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생략) <신설> <신설> 제1장 법원행정처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	③ ----- -----<u>사법행정위원회</u>가-----.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및 예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편제2장(외환의 죄)의 죄에 관한 사건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요 사건에 관한 재판의 경우에는 생중계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중계의 범위와 구체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장 <u>사법행정위원회</u> 제67조(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사법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원의 인사·예산(예산 요구서, 예비금 지출안 및 검토보고서의 검토를 포함한다)·회계·시설·통계·등기·가
---	---

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
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
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
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
관을 둔다.

⑥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
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
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정
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
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
로 보한다.

<신 설>

족관계등록 · 공탁 · 집행관 ·
법무사에 관한 사항

2.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법원규칙의 제 · 개정 요구

4. 대법원예규의 제 · 개정

5. 그 밖에 사법행정의 사무처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장 1명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
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 위
원장이 된다.

②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제67조의3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 임명한다.

1. 법관 3명

2. 변호사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단, 판사 또는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재판제도 및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고 주요 사업정책의 수립 등 사법행정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
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
거나 등록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탄
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
되지 아니한다.

제67조의3(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
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임명
할 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
여 국회에 사법행정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
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명

2.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
는 법관 3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1명

<신 설>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임명되면 해당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법관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추천하여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67조의5(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67조의6(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 설>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관이 아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법관인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7(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를 총괄한다.

③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에 사무처장비서관을 둔다.

제68조(임명) ①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무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법행정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69조(국회출석권 등) 사무처장은-----

-----.

제71조(조직) ① 사무처에-----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② -----
-----두되, 사법행정위원회가 임명한다.

③ 법원행정처장 · 차장 · 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 · 조사, 심사 · 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 5. (생략)

③ 사무처장-----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① -----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정무직으로 임명하거나 판사 중에서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고-----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정무직으로 임명하거나 검사-----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임명한다.

② -----

-----사법행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
-----.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 4. (생략)

제78조(원장 등)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81조(조직) ① (생략)

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

② -----

-----사법행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하거나 임명하거나-----임명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78조(원장 등) ①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판사로-----임명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판사-----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

③ · ④ (생략)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u>임명하거나</u> 위촉한다. 1. ~ 3.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u>임명하거나</u> 위촉한다. 1. ~ 5. (생략) ④ (생략) 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u>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략) ⑥ (생략)	<u>명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사법행정위원회의</u> <u>제청을 받아 임명하거나</u>----- -----. 1. ~ 3. (현행과 같음) ③ ----- -----<u>사법행정위원회의</u> <u>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u>-----.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사법행정위원회의</u> <u>동의를 받아 그</u>----- -----. 1. ·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